

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군구 정보화 사업에 따라 한시 증원된 전산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시 증원된 전산8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로 함
(조례 제500호 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9조(한시증원)
- 부산광역시사하구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한시증원)
-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증원 기한연장 승인 [기획 12200-21888(2002. 12. 13)]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인력(1명)의 존속기한을 2002. 12. 31에서 2004. 6. 30 까지로
1년 6개월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2.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